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2899 등록무효(특)

원 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재태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홍순표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3. 29. 2021당22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 1) 발명의 명칭: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7. 2./ 2016. 3. 2./ 제10-1601126호
- 3) 청구범위: 2021. 10. 22.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밑줄 친 부분은 2021. 10. 22.자 정정청구로 부가된 내용이다)¹⁾

【청구항 1】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4각형상의 고정설치대(1)위에 4각형상으로된 집받이프레임(2)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1)의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101) 안내홈(102)에 집받이프레임(2)의 양측저면에 형성된 안내판(201)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201a)을 결합하여 집받이프레임(2)이 고정설치대(1)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집받이프레임(2)의 일측 안내판(201)의 전방 표면에 안내관체(202)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고정설치대(1)의 안내레일(101) 표면에 형성된 고정홈(103)(104)을 향해 안내공(203)(203a)을 뚫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고정봉(204)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204)은 안내관체(202)

¹⁾ 원고는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정정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대부에서 안내레일의 고정홈(103)(104)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204) 내측단 외주면에 형성한 돌기(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측 안내공(203)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 링(205)을 설치하고, 고정봉(204)의 외측단을 외측 안내공(203) 외부로 돌출시켜 손잡이(204b)를 장치한 제1고정자(가)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일측 안내레일(101)의후방 말단 내측에서 집받이프레임(2)의 안내판(201)에 형성된 안내공(206)을 향해 고정볼트(3)를 설치하고 고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4)를 나사결합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안내판(201)에 밀착될 수 있게 하되, 고정너트(4) 중심공(401)에 연결볼트(5)를 끼워 연결볼트 내측단을 고정볼트(3) 중심나사공(301)에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4) 중심공과연결볼트(5)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을 장치한 제2고정자(나)를 함께 구비하여(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집받이프레임(2)의 위치를 제1고정자(가)가 설정하면 제2고정자(나)가 설정위치에 고정시키도록 한(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스쿠터용 슬라이더 집받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4) 주요 내용과 도면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본원 출원인의 선등록 특허발명 제 10-0942247호를 개량하여 짐받이 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되게 구성한 것이다.

②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선행 발명에서는 스쿠터후미에 부착되는 고정설치대 위에 짐받이 프레임을 적층하여 짐 받이프레임의 양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을 고정설치대의 양측면에 형성된 고정레일에 결합 시켜 슬라이드되게 하고, 고정시에는 고정설치대의 후미측 중앙부에 형성한 걸림부의 고정 관에 짐받이 프레임에 장치한 고정봉이 삽탈되게 하여 고정과 해제가 이루어지게 것이므로 고정부의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비용이 많아 고정관과 고정봉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면 주행 시 소음이 발생하여 귀에 거슬리는 불편이 있었다.

③ 과제의 해결수단 및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4각형상의 고정설치대(1)위에 4각형상으로 된 짐 받이프레임(2)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1)의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101) 안내홈(102)에 짐 받이프레임(2)의 양측저면에 형성된 안내판(201)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201a)을 결합 하여 짐받이프레임(2)이 고정설치대(1)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 서, 짐받이프레임(2)의 일측 안내판 표면에 안내관체(202)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고정설치대(1)의 안내레일(101) 표면에 형성된 고정홈(103)(104)을 향해 안내공(203)(203a)을 뚫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고정봉(204)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204)은 안내관체(202) 내부에서 안내레일의 고정홈(103)(104)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204) 내측단 외주면에 형성한 돌기(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측 안내공(203)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링(205)을 설 치하고, 고정봉(204)의 외측단을 외측 안내공(203) 외부로 돌출시켜 손잡이(204b)를 장치한 통상의 제1고정자(가)와, 일측 안내레일(101) 말단에서 짐받이프레임(2)의 안내판(201)에 형 성된 안내공(206)을 향해 고정볼트(3)를 설치하고 고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4)를 나사결 합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201)에 밀착하게 하고, 고정너트(4) 중심공(401)에 연결볼 트(5)를 끼워 연결볼트 내측단이 고정볼트(3) 중심나사공(301)에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4) 와 연결볼트(5)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을 장치하여서 된 제2고정자(나)를 같이 구성함으로 써,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는 제1고정자(가)와, 위치가 설정된 짐받이프레임을 확고 히 고정하는 제2고정자(나)의 결합으로 증진된 효과를 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4 발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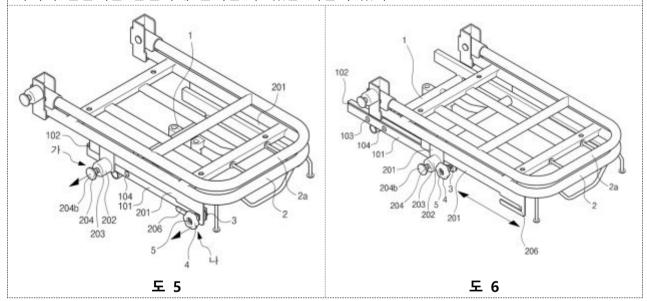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은 제2고정자(나)의 고정너트(4)를 풀고 제1고정자(가)의 고정봉(204) 손잡이(204b)을 잡고 밖으로 당기면 고정봉이 안내레일의 고정홈에서 분리되므로 짐받이프레임(2)과 고정설치대(1)사이의 걸림이 해소되어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설치대 위에서 전후로 슬라이드 시킬 수 있고, 슬라이드 거리가 정해져서 고정봉(204)을 당기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고정봉(204)이 안내관체 속에 장치된 코일스프링의 탄력을 받아 내향하여 안내레일의 고정홈에 투입되어 짐받이프레임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고정되게 되는데 이때 짐받이 프레임의 위치를 스쿠터 좌대에서 내향 또는 외향한 위치에 설치한 고정홈(103)(104)에 선택함으로써, 필요한 위치에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2고정자(나)의 고정너트(4)를 고정볼트(3)에

나사조립하여 고정너트(4)의 내면에 안내판(201)의 표면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201)의 내측면과 안내레일(101)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고정너트(4)는 고정볼트(3)에 나사 결합된 연결볼트(5)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4)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3)에서 완전분리될 염려가 없고 나사공 내측과 고정볼트(3)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이 장진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였을 때, 긴장력을 향상시켜 주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와의 이완을 막아주므로 고정너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선행발명들2)

1) 선행발명 1(갑 제8호증)

선행발명 1은 2013. 9. 3.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68704호에 게재된 '오토바이용 가변형 짐받이의 고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주요 내용과 도면은 생략한다.

²⁾ 선행발명 1, 2는 실제로는 '고안'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를 함에 있어 편의상 모두 '발명'이라고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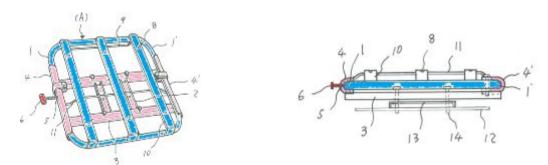
2) 선행발명 2(을 제2호증)

2010. 8. 6.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0007874호에 게재된 '오토바이용 가변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0001] 본 고안은 주유구 또는 공구함이 안장 밑에 위치한 오토바이(스쿠터)에 있어서, 짐받이가 슬라이드식으로 가변이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안장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에 따라 <u>주유 또는 공구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오토바이용 가변</u>짐받이에 관한 것이다.

[0003] 특히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후미에 별도의 짐받이를 장착사용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소형오토바이(스쿠터)의 경우 연료탱크가 주로 안장 밑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안장 밑에 각종 공구나 소형의 물건등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구비되어 있는데다가 화물을 안정적으로 적재 이송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짐받이 선단부분이 안장의 후미부분까지 위치하게끔 장착 고정시켜야만 하였기에 주유를 하거나 공구를 꺼내려고 할 때는 짐받이를 일일이 분해한 뒤 하여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0004] 한편,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고안으로 짐받이를 슬라이드식으로 이송 시킴으로서 안장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성이 실용신안등록 제0365326 호3)로 등록되어있다.



[종래의 실용신안등록 제20-365326호의 도 1 및 도 3]

[0006] 그러나 상기 선 등록 고안은 그 구조적 특성상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밖에 없다.

[0007] 첫째, 레일(4) 내측에 짐받이 프레임의 양측 파이프(1)가 끼워져 슬라이딩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하게 제작 구성한다 하더라도 짐받이가 요동 즉, 흔들릴 수밖에 없

는 폐단이 따르게 된다.

[0008] 둘째, 상기 짐받이 프레임이 고정 프레임의 상부에 위치하여 레일을 타고 간섭없이 이송될 수 있게 구성하려다보니 짐받이 프레임의 상부에 3개의 받침간(10)을 돌출되게끔 높여 설치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화물 적재시 안정성이 떨어지는 폐단이 따른다.

[0009] 셋째, 화물을 결착시킴과 동시에 안전을 위한 등받이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급출발, 급정차 시 매우 위험한 폐단도 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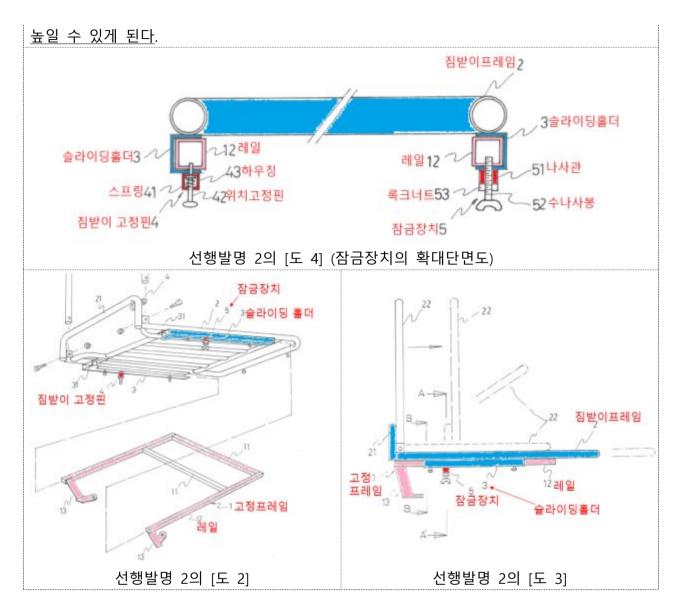
[0010] 넷째, 가압볼트(6)가 레일의 외부 측면으로 길게 돌출되는 구성이기에 옷깃이나 각종 사물에 걸리기 쉬워 안전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매우 크다.

[0011] 본 고안은 전술한 종래의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히 레일을 사각파이프로 구성하고, 짐받이의 양측 저면에는 상기 레일을 감싸면서 짐받이 및 화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받쳐 지탱하는 슬라이딩 홀더를 장착 고정시키는데, 상기 슬라이딩 홀더의 선단 내측에는 레일에 안정적으로 결합되면서 이송 또한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안내롤러를 장착구성하고 짐받이의 선단에 안전난간 및 세우거나 눕힐 수 있는 절첩식등받이를 장착하여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가변짐받이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0029] 특히, 본 고안에 있어서 레일(12)은 사각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레일(12)에 조립되어 안정적으로 슬라이딩 작동되며 이송되는 슬라이딩 홀더(3)는 "ㄷ"형으로 되어 레일(12)을 감싸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선단에 레일(12)의 내측 면과 구름 마찰되는 안내롤러(31)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상기 슬라이딩 홀더(3)가 짐받이프레임(2)의 저면에 장착 고정된 상태이므로 짐받이 프레임(2)에 많은 짐이 실려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송될 수 있게 된다.

[0030] 또한 상기 안전난간(21)과 슬라이딩 홀더(3) 일 측 저면에 <u>스프링(41)과 위치 고정핀(42) 및 하우징(43)으로 이루어진 짐받이 고정핀(4)</u>을 장착 고정시켰으므로 등받이(22)를 세웠을 때와 짐받이프레임(2)을 <u>전진 또는 후진시킨 상태를 유지할 때 간단하게 고정</u>시킬 수있게 된다.

[0031] 또, 상기 슬라이딩 홀더(3) 타 측 저면에 <u>나사관(51)과 수나사봉(52)</u>, 그리고 록크너트 (53)로 이루어진 잠금장치(5)를 더 설치 구성함으로서 <u>오토바이에 화물 등을 싣고 이동할 때상기 잠금장치(5)로서 짐받이 프레임(2)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음으로 안전성을 한층 더</u>



3) 선행발명 3(갑 제5호증의 1)4)

2009. 12. 2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9-299885호에 게재된 '느슨함 방지 볼트'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0001】본 발명은 복수의 볼트로 너트를 편성해 체결한 후에, 체결 볼트로 너트의 느슨함 방지를 도면것이 생기는 느슨함 방지 볼트에 관한다.

³⁾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들 중 하나와 동일하다.

⁴⁾ 갑 제5호증의 1의 번역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0002】 <u>종래</u>는 너트에 의한 체결은 비교적 작은 힘으로 체결력을 발휘할 수 있어 체결 후에는 단단히 조여를 증 잡아하거나 해이해질 수 있거나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u>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부분을 체결하고 있는 너트에서는, 자연히 단단히 조여가 해이해져, 확실한 체결력을 유지할 수 없다</u>. 이 때문에 너트가 해이해질 수 있는 멈춤으로서 분할 핀·스프링좌금·로크 너트 등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0003】 종래의 너트에 의한 체결은 예를 들면 건축물의 구조재 등의 체결로 넓게 이용되어 있다. 그러나, 너트에 의한 체결에서는, 목재 등의 경년 변화(건조 등)에 의한 나무 마름등에서 효과적으로 느슨함을 방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분할 핀·스프링좌금·로크 너트고무 등으로 서도 용이하게 체결 부분을 해이해질 수 있어서라고 끝낸다. 예를 들면, 접착제 등에 의해고정하는 방법의 경우, 작업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너트를 해이해질 수 있을 필요를 일으킬 때는 용이하게 해이해질 수 있을 수 있고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간단한 구성이다 체결 부분의 느슨함 방지를 도모할 수 있고, 필요일에는 너트를 해이해질 수 있는 때는 것이 가능한 느슨함 방지 볼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0005】 청구항 2기재된 발명은 볼트축부 1에 수 나사부와, 그 선단부로 확장부를 가짐과 동시에, 기단부로 복수의 분할 홈을 마련하고 게다가, 길이 방향으로 복수의 작업 공구 삽입 구멍을 마련한 중공 원통형부와, 상기 볼트축부 1의 수 나사부에 삽입하는 탄성체를 가지는 와서 C와, 나사 결합되는 너트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느슨함 방지 볼트이다. 또한, 청구항 1 및 2기재된 발명의 「탄성체를 가지는 와서 C」란, 탄성체와 와서가 일체가된 형상이며, 그에 너트를 단독으로 단단히 조이는 구성이다. 또한, 상기 와서 C와 너트의중간에 사용 용도에 의해 수매의 탄성체를 겹쳐 신축폭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탄성체와 와서의 위치는 반대로라고도 좋고, 또한, 복수의 탄성체류·와서·너트를 개개로 분리한 상태로 사용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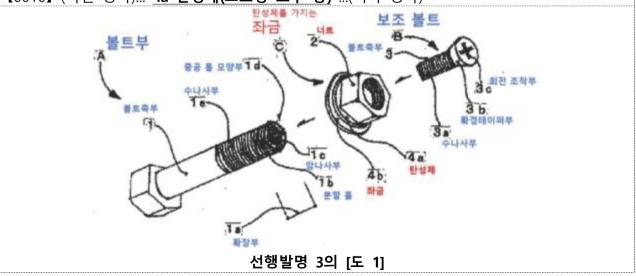
【0006】청구항 1기재된 발명은 볼트부 A의 볼트축부 1에 상기 와셔 C를 삽입하고, 상기 너트를 나사 결합한다. 그 후, 상기 중공 원통형부의 상기 삽입 구멍으로, 상기 수나사부와 상기 테이퍼부분을 가지는 상기 볼트 B로 나사 결합함으로써, 상기 볼트부 A선단부의 상기 확장부를 확장함과 동시에, 상기 볼트 B의 상기 테이퍼부분에 의하고, 상기 분할홈이 외측으로 돌출되어 확장함으로써 진동·충격·열변화 등에서, 상기 <u>너트가 볼트부 A로부터 빗나가</u>탈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볼트 시공 후에, 상기 너트와 상기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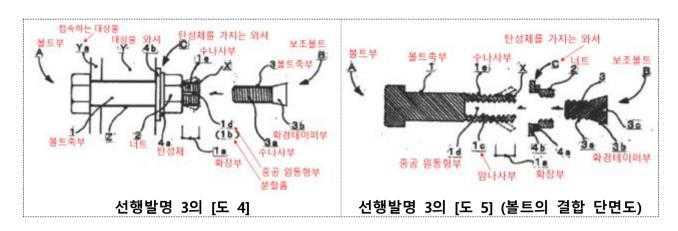
트 B를 재차 단단히 조일 수도 있으므로, 상기 너트를 해이해지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재 등과 같은 경년 변화(건조 등)에 의한 나무 야위어 했을 경우라도, 상기 볼트 B에서의 나사 결합에 의한 상기 **와서 C의 작용으로, 상기 너트가 돌아올 것은 없게(풀리지 않게) 느슨함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

【0008】(실시 형태 1) 이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해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청구항 1기재된 느슨함 방지 볼트는 볼트축부 1에 수 나사부 1e와, 길이 방향으로 암나사부 1c를 가지는 상기 B삽입 구멍을 내부에 마련한 중공 원통형부 1d(구체적으로는 원통형)와, 볼트축부 1의 수 나사부 1e에 삽입하는 탄성체 4a를 가지는 와셔 C와, 나사 결합되는 너트 2에서 구성된 볼트부 A와, 볼트축부 1의 중공 원통형부 1d에 나사 결합하는 보조 볼트 B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볼트축부 1과, 와셔 C와, 너트 2와, 보조 볼트 B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금속제의 부재이지만, 금속으로 한정되지 않고 금속 이외의 재료로 상관없다.

【0013】(실시 형태 6) 보조 볼트 B의 구성을 설명한다. 보조 볼트 B는 볼트축부 3에 수 나사부 3a와 테이퍼부분 3b를 가지고, 머리부에 보조 볼트 B를 나사 결합시켜야 할 회전 조작부 3c를 마련하는 것이다.이 회전 조작부 3c의 머리부는 도시예에서는 십자 구멍이지만,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육각 형상 등으로 형성되어도 좋다.보조 볼트 B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구조재 등으로 대상물 Y를 고정하려면보조 볼트 B의 회전 조작에 의해서 볼트축부 3의 수 나사부 3a를, 볼트부 A의 와셔 C와 너트 2를 개재해 암나사부 1c에 나사 결합함으로써, 중공 원통형부 1d저부에 부딪친 곳에서 확장부 1a가 확장함으로써 완료가 된다.

【0016】(이전 생략)... 4a 탄성체(스프링 고무 등) ...(이하 생략)





4) 선행발명 4(갑 제6호증)

2010. 2. 18.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942247호에 게재된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짐받이 프레임을 전진시켜 고정하거나 후퇴시켜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시트를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고, 시트 상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이다.

②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0002] 스쿠터는 시트 아래에 수납함과 연료주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전기스쿠터의 경우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짐받이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시트를 쉽게 여닫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대한민국 등록실용 20-0351550호 "오토바이(스쿠터)용 짐받이"가 등록된바 있다.

[0003] 그러나 종래 짐받이는 주유를 할 때 받침간을 들어올리면 연료통의 급유구 주변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공간부가 형성되므로 원할하게 연료공급이 이루어지며, 연료공급이 끝난 후 들어 올려진 받침간을 밑으로 내려 원상복귀시켜서 횡간의 양쪽 탄지편으로 하여 금 짐받이 양측 사이드 외주면을 탄지하여 동 받침간이 짐받이에 고정되는 것으로 짐받이 전체가 오토바이에 부착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개폐가 용이하여 평상시에는 짐받이 간이되고 연료공급시는 잠시 배제되어 원활한 급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0004] 주행시 진동에 의하여 횡간의 양쪽 탄지편이 짐받이와 부딪쳐 소음이 심하고, 종래

의 짐받이를 장착하면 시트의 공간이 줄어들어 운전자 밖에 탈수 없는 문제점 있었다.

[0005]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짐 받이를 스쿠터에 고정하는 고정설치대와 짐받이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짐받이 프레임이 레 일을 따라 이동되고, 전진고정부와 후퇴고정부를 만들어 상황에 따라 짐받이 프레임을 전진 시켜 고정하거나 후퇴시켜 고정할 수 있는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③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0013] 고정설치대(100)는 지지대(110)의 앞쪽에 짐받이체결편(111)이 용접되고 지지대(110)의 가운데에 고정레일설치편(112)이 용접되어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고 고정레일설치편(112)후방에 수평프레임(120)과 보강프레임(130)이 용접되어, 수평프레임(120) 중간 하부에는 짐 받이체결편(121)이 용접되고, 보강프레임(130)의 중간 하부에 걸림부설치편(131)을 용접한후 고정레일설치편(112)과 보강프레임(130) 측면에 고정레일(140)을 용접 고정하여, 고정레일(140)하부 뒷부분에는 후퇴삽입구(150)가 용접된다.

[0014] 짐받이 프레임(200)은 양쪽 하부에 이동레일(220)을 용접하고, 짐받이프레임(200)을 후퇴시켜 고정설치대(100)의 후퇴삽입구(150)가 위치하는 곳에 후퇴고정부(230)의 고정돌기 (231)가 삽입될 수 있게 짐받이프레임(200)의 이동레일(220) 바깥쪽에 후퇴고정부(230)를 형성하며, 짐받이프레임(200)을 전진시켜 전진삽입구(330)가 위치하는 곳의 짐받이프레임(200)에 전진고정부(240)가 설치된다.

[0015] 상기 걸림부(300)는 양쪽에 볼트삽입구가 형성된 플레이트(310) 상부에 걸림편(320) 이 형성되고 걸림편(320) 뒤쪽에 전진삽입구(330)를 형성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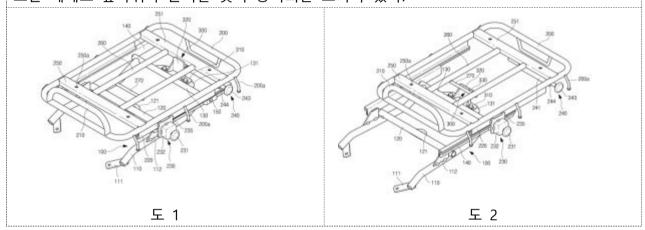
[0016] 고정설치대(100)의 고정레일(140)에 짐받이프레임(200)의 이동레일을 삽입한 후 고정설치대(100)의 걸림부설치편(131) 상부에 걸림부(300)를 체결하는 구성으로 상황에 따라 짐받이 프레임을 전진시켜 고정하거나 후퇴시켜 고정할 수 있게 된다.

[0018] 상기 후퇴고정부(230)는 손잡이가 형성된 고정돌기(231)를 커버(232)에 삽입하고 삽입된 고정돌기(231)에 스프링(233)을 삽입한 후 스프링(233)이 빠지지 않게 분할핀(234)을 삽입하여 고정돌기삽입구(235a)가 형성된 후퇴고정부체결편(235)에 용접 고정한다.

[0019] 전진고정부(240)는 파이프(241)에 와셔(242)를 용접하고, 내부에 손잡이가 형성된 고 정돌기(243)에 와셔(244)와 스프링(245)을 삽입하고 고정와셔(246)를 용접하여 파이프에 삽 입한 후 와셔(244)를 파이프(241)에 용접되는 구성이다.

4 발명의 효과

[0010] 본 발명에 의한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는 짐받이 프레임을 후퇴시켜 후퇴고정돌 기를 후퇴삽입구에 고정하면 시트 상부가 개방되므로, 시트를 쉽게 여닫을 수 있으며, 시트를 닫은 후 시트 상부에 두 사람이 함께 동승한 후에도 짐받이에 짐을 실을 수 있고, 짐받이 프레임을 전진시켜 고정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되어 무거운 짐을 싣고 오르막을 오를 때에도 앞바퀴가 들리는 것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5) 선행발명 5(갑 제9호증)

선행발명 5는 2015. 2. 5. 공개된 등록특허공보 제10-147856호에 게재된 '오토바이용 가변형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주요 내용과 도면은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1. 7.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고(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②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45)에 비교대상발명 2,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3, 6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⁵⁾ 비교대상발명 1, 2, 3, 4, 6은 선행발명 1, 2, 3, 4, 5와 같다.

- 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피고는 2021. 10. 22.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앞서 본 가.3) 항과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 3)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229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29. '피고의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9(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6)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 2, 3,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⁶⁾ 원고는 2022. 11. 1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재불비에 관하여 더는 다투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3면 참조).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4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4각형상의	[0012]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스쿠터용
	①고정설치대(1) 위에 4각형상으로 된 ②	슬라이더 짐받이의 사시도 이고
	<u>짐받이프레임(2)</u> 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	[0013] <u>①고정설치대(100)</u> 는 지지대(110)
	(1)의 양측면에 형성된 ①안내레일(101)	의 앞쪽에 짐받이체결편(111)이 용접되고
	<u>안내홈(102)</u> 에 짐받이프레임(2)의 양측저	지지대(110)의 가운데에 고정레일설치편
	면에 형성된 <u>④안내판(201)의 내측면에</u>	(112)이 용접되어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
	<u>형성된 이동레일(201a)</u> 을 결합하여 짐받	고 고정레일설치편(112) 후방에 수평프레
	이프레임(2)이 고정설치대(1) 위에서 길이	임(120)과 보강프레임(130)이 용접되어,
	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	수평프레임(120) 중간 하부에는 짐받이체
	서,	결편(121)이 용접되고, 보강프레임(130)의
		중간 하부에 걸림부설치편(131)을 용접한
1		후 고정레일설치편(112)과 보강프레임
•		(130) 측면에 <u>③고정레일(140)</u> 을 용접 고
		정하여, 고정레일(140) 하부 뒷부분에는
		후퇴삽입구(150)가 용접된다.
		[0014] ② <u>짐받이 프레임(200)</u> 은 양쪽 하
		부에 ⓒ이동레일(220)을 용접하고
		[0016] 고정설치대(100)의 고정레일(140)
		에 짐받이프레임(200)의 이동레일을 삽입
		한 후 고정설치대(100)의 걸림부설치편
		(131) 상부에 걸림부(300)를 체결하는 구
		성으로 상황에 따라 짐받이 프레임을 전
		진시켜 고정하거나 후퇴시켜 고정할 수
		있게 된다.
2	짐받이프레임(2)의 일측 안내판(201)의 전	[0013] 고정레일(140) 하부 뒷부분에는

방 표면에 ④안내관체(202)를 부착하여 ④후퇴삽입구(150)가 용접된다.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고정설치대(1)의 안 [0014] ... 후퇴삽입구(150)가 위치하는 곳 내레일(101) 표면에 형성된 ④고정홈 (103)(104)을 향해 안내공(203)(203a)을 뚫 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②고정봉 (204)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204)은 안 내관체(202) 내부에서 안내레일의 고정홈 (103)(104)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 (204) 내측단 외주면에 형성한 ⑩돌기 (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측 안내공 스프링(233)을 삽입한 후 스프링(233)이 (203)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링(205)을 설치하고, 고정봉(204)의 외측단을 외측 안내공(203) 외부로 돌출시켜 ॗ환손잡이 (204b)를 장치한 ③제1고정자(가)와,

에 후퇴고정부(230)의 고정돌기(231)가 삽 입될 수 있게 짐받이프레임(200)의 이동 레일(220) 바깥쪽에 ③후퇴고정부(230)를 형성하며 ...

[0018] 상기 후퇴고정부(230)는 ⑫손잡이 가 형성된 ②고정돌기(231)를 ③커버(232) 에 삽입하고 삽입된 고정돌기(231)에 🚱 빠지지 않게 ⑩분할핀(234)을 삽입하여 고정돌기삽입구(235a)가 형성된 후퇴고정 부체결편(235)에 용접 고정한다.

일측 안내레일(101)의 후방 말단 내측에 서 짐받이프레임(2)의 안내판(201)에 형성 된 안내공(206)을 향해 고정볼트(3)를 설 치하고 고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4)를 나사결합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 (201)에 밀착될 수 있게 하되, 고정너트(4) 중심공(401)에 연결볼트(5)를 끼워 연결볼 트 내측단을 고정볼트(3) 중심나사공(301) 에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4) 중심공과 연결볼트(5)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을 장

대응 구성 없음

짐받이프레임(2)의 위치를 제1고정자(가) 가 설정하면 제2고정자(나)가 설정위치에 4 고정시키도록 한

치한 제2고정자(나)를 함께 구비하여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3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은 모두 4각 형상의 고정설치대[고정설치대]7) 위에 짐받이프레임[짐받이프레임]이 적층되고, 고정설치대의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고정레일]에 짐받이프레임의 양측 저면[하부]에 형성된이동레일[이동레일]을 결합하여 짐받이프레임[짐받이프레임]이 고정설치대[고정설치대]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은 짐받이프레임 [짐받이프레임]에 마련되어 고정설치대[고정설치대]의 고정홈[후퇴삽입구]과 결합하는 위치설정수단으로서, 안내레일[고정레일] 표면에 형성된 고정홈[후퇴삽입구]을 향해 이동레일[이동레일]에 형성된 안내공[후퇴고정부]을 통해 제1고정자(가)[후퇴고정부]를 삽입하여 짐받이프레임[짐받이프레임]의 이동된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과 고정위치가 다르고,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이는 고정설치대 내에 고정홈[후퇴삽입구]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 형성되는지에 따른 것으로, 그 위치는 짐받이프레임이 고정될 필요가 있는 위치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치의 차이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 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구성요소 3, 4

⁷⁾ 대괄호 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4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3, 4로 제1고정자(가)가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면 해당 위치에 짐받이프레임을 고정하는 제2고정자(나)와 함께 제2고정자(나)의 구체적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반면에 선행발명 4에는 구성요소 3의 제2고정자(나)와 같이 나사결합 형태로 짐받이프레임을 고정하는 구성(이하 '차이점 1'이라고 한다)과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의 유기적인 결합 구성(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에 대 응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 검토

가) 차이점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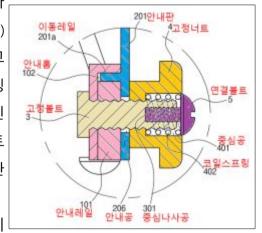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고정자(나)에서 고정설치대의 안내레일(101)의 후방 말단에 결합된 고정볼트에 고정너트가 나사결합되고 고정너트의 중심공을 관통한 고정 볼트의 단부에 연결볼트가 나사결합되며 중심공 내에 고정너트와 연결볼트 사이로 코일 스프링이 장치된다. 이에 따라 제2고정자(나)에서 고정너트를 조이면, 고정너트의 나사결 합과 코일스프링의 탄성으로 고정너트 내면이 안내판에 밀착되면서 짐받이프레임은 확 고하게 고정되고, 고정너트를 풀 때는 코일스프링의 탄성으로 고정너트의 이완이 제한되 어 고정너트가 고정볼트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방지된다. 이로써 제2고정자(나)는 고정효 과가 확고하면서도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한 고정자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 사건 특허명세서 3면 '발명의 효과' 둘째~넷째 문단]

이리하여 짐받이 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2고정자(나)의 고정너트(4)를 고정볼트(3)에 나사조립하여 고정너트(4)의 내면에 안내판(201)의 표면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201)의 내

측면과 안내레일(101)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고정너트(4)는 고정볼트(3)에 나사 결합된 연결볼트(5)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4) 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3)에서 완전분리될 염려가 없고 나사공 내측과 고정볼트(3)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 (402)이 장진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였을 때, 긴 장력을 향상시켜 주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 와의 이완을 막아주므로 고정너트를 안전하게 유지관 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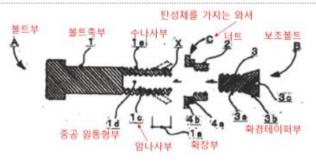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구성 중 고정볼트에 고정너트가 나사결합되고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에 밀착되어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시키는 것은 볼트·너트의 조임 고정에 관한 일반적 기술상식 내지 공지의 기술을 채용한 것이나, 고정너트와 연결볼트 사이로 코일스프링을 장치하여 고정너트가 고정볼트로부터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은 선행발명들에 개시되지 않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과제해결수단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3의 고정너트와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링을 구비하는 것은 선행발명 3의 볼트축부와 보조볼트 사이에 스프링을 적용하거나 탄성체를 가지는 와서 대신에 스프링을 넣어 구성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풀림방지를위해 다양하게 볼트, 너트, 코일스프링의 위치를 조합하는 정도는 주지관용기술인 노브, 볼브, 너트, 스프링을 활용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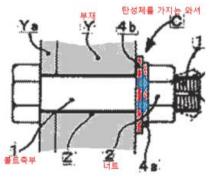
그러나 선행발명 3의 탄성체를 가지는 와셔(C)는 너트(2)와 부재(Y)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해당 와셔는 너트가 조여져 너트와 부재 사이에 맞닿게 되는 상태에서만 너트를 밀어내어 그 조임이 풀리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할 뿐이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일스프링과 같이 고정너트가 풀릴 때 연결볼트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은 할 수 없다.

【0006】청구항 1기재된 발명은 볼트부 A의 볼트축부 1에 상기 와셔 C를 삽입하고, 상기 너트를 나사 결합한다. 그 후, 상기 중공 원통형부의 상기 삽입 구멍으로, 상기 수나사부와 상기 테이퍼부분을 가지는 상기 볼트 B로 나사 결합함으로써, 상기 볼트부 A선단부의 상기 확장부를 확장함과 동시에, 상기 볼트 B의 상기 테이퍼부분에 의하고, 상기 분할홈이 외측으로 돌출되어 확장함으로써 진동·충격·열변화 등에서, 상기 너트가 볼트부 A로부터 빗나가 탈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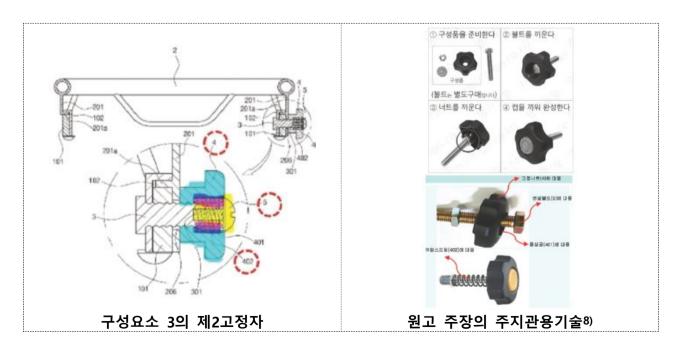
선행발명 3의 [도 5] (보조볼트의 결합 상태)



선행발명 3의 [도 4] 일부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3의 제2고정자(나)는 고정너트, 고정볼트, 연결볼트, 코일스프링의 특유한 결합구조로써, 고정너트를 조였을 때 나사결합과 코일스 프링의 탄성이 더해져 긴장력을 향상하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는 코일스프링의 탄성 으로 고정너트의 이완을 제한하여 고정너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구성요소 3의 제2고정자(나)는 고정너트를 수시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전체로 고정너트가 고정볼트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제한한다. 반면에 선행발명 3의 느슨함 방지 볼트에서 고정볼트를 보조볼트(B)가 볼트의 중공 원통형부(1d)에 나사결합된 상태에서 보조볼트를 조일 경우, 보조볼트의 확경테이퍼부(3b)가 확장부를 확장시키게 되고, 이로써 확장부와 부재 사이에 위치한 너트는 단단히 고정되며, 해당 너트는 보조볼트를 풀기 전까지는 이완이 극도로 억제된다. 이처럼 선행발명 3에서 구성요소 3의 제2고정자(나)와 같이 너트를 풀 때 볼트와의 이완을 방지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없고, 애초에 너트의 자유로운 조작을 전제로 한 발명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같이 변경할 만한 동기가 암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주지관용의 볼트와 너트라고 제시한 구성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동일하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볼트와 너트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제2고정자(나)와 같은 구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정너트 대응 구성은 단순한 손잡이 노브에 불과하여 제2고정자(나)의 고정 너트와 같이 맞닿는 부재를 압박하여 고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결볼트(5) 대응 구성은 그 자체가 볼트부를 이루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고정자(나)에서 고정볼트(3) 단부에 나사결합되는 연결볼트(5)와는 다른 것이다. 나아가 구성요소 3의 코일스프링(402)은 고정너트(4)와 연결볼트(5) 사이에서 고정너트(4)와 연결볼트(5)의 이완을 제한하는 반면에, 주지관용기술의 고정너트 대응 부분은 그 자체로도 고정 너트(4)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코일스프링(402) 대응 부분 역시 고정너트(4) 대응 부분과 연결볼트(5) 대응 부분 사이에 놓이지 않는다.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볼트와 너트, 코일스프링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고정자(나)와 같은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이점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의해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의 유기적 구성은 '제1고정자(가)에 의한 짐받이프레임의 전·후진 위치설정과 제2고정자(나)에 의 한 설정위치에서의 안정된 고정에 관한 조작을 함께 이루어 사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 과'를 발휘하기 위한 구성이다.

[이 사건 특허명세서 2면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본원 출원인의 선등록 특허발명 제 10-0942247호를 개량하여 짐<u>받이 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안정적</u>으로 이루어지고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되게 구성한 것이다.

⁸⁾ 원고의 2022. 11. 18. 준비서면 11면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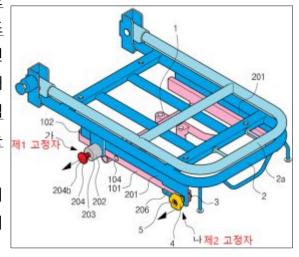
[이 사건 특허명세서 3면 '과제의 해결수단'의 마지막 1~3줄]

집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는 <u>제1고정자(가)와, 위치가 설정된 집받이프레임을 확고히 고</u> 정하는 제2고정자(나)의 결합으로 증진된 효과를 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명세서 3면 '발명의 효과'의 둘째 및 마지막 문단]

이리하여 <u>짐받이 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2</u> 고정자(나)의 고정너트(4)를 고정볼트(3)에 나사조 립하여 고정너트(4)의 내면에 안내판(201)의 표면 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201)의 내측면과 안내 레일(101)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u>짐받이프레임</u> 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2에는 다음과 같이 짐받이 고정핀(4)과 잠금장치(5)를 함께 구비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전·후진 상태의 고정과 안정된 고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0001] 본 고안은 주유구 또는 공구함이 안장 밑에 위치한 오토바이(스쿠터)에 있어서, 짐받이가 슬라이드식으로 가변이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안장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에 따라 주유 또는 공구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u>오토바이용 가변</u>짐받이에 관한 것이다.

[0030] 또한 상기 안전난간(21)과 슬라이딩 홀더(3) 일 측 저면에 스프링(41)과 위치 고정핀(42) 및 하우징(43)으로 이루어진 <u>짐받이 고정핀(4)</u>을 장착 고정시켰으므로 등받이(22)를 세웠을 때와 <u>짐받이프레임(2)을 전진 또는 후진시킨 상태를 유지할 때 간단하게 고정</u>시킬 수있게 된다.

[0031] 또, 상기 슬라이딩 홀더(3) 타 측 저면에 나사관(51)과 수나사봉(52), 그리고 록크너트 (53)로 이루어진 잠금장치(5)를 더 설치 구성함으로서 오토바이에 화물 등을 싣고 이동할 때

- (3)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2는 모두 오토바이용 가변짐받이로서 같은 기술분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4의 후퇴고정부(230)와 선행발명 2의 짐받이고정핀(4)은 고정돌기(231) 또는 위치고정핀(42)이 레일부를 관통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잠금장치(5)를 그 본연의 기능과 목적으로 선행발명 4에 부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4)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같이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가 같은 측에 배치되는 것이 선행발명 2에서 서로 다른 좌우측에 각각의고정부가 구비되는 것보다 스쿠터 운행 시 짐받이의 전후 상하 요동을 더욱 효과적으로억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에 있어 고정자의 배치 차이는 작용효과상 큰 차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가 나란히 배치되어야 한다는 한정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고정수단을 나란히 배치할지 양측으로 배치할지는 구성부분의 형태와 주변 구성과의 관계, 사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제1고정자(가)가 고정홈과의 관계에서 삽입을 위해 소정의 유격을 갖는 구조임은 자명하므로, 요

동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고정은 제2고정자(나)만에 의한 작용이라 보일 뿐이다. 짐받이 프레임의 전후 진동에 대한 효과적인 고정이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가 같은 측에 전후 배치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검토결과의 정리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